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자녀가구의 숙박·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근거 마련〉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51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다자녀가구의 숙박·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4. 10. 17.
3. 회 부 일 : 2024. 10.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양육·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입니다.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7조의3).

Ⅲ. 검토의견

1. 다자녀가구의 숙박·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관광 분야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장애인· <u>고령자</u> 관광 활동의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47조의3(장애인· <u>고령자·다자녀</u> 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로 계속 하락하여 2023년의 경우 0.72명을 기록하였음.¹⁾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거·양육·교육·세금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p. 6. 표 참조).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서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관광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음.

특히 호텔의 경우 2인 1실,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3인 1실인 경우가 보편적으로 5인 가족의 경우 객실을 2개 예약해야 하는 등, 다자녀가구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금전적인 부담과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음.

1)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 통계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출산율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78	0.721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가족호텔’²⁾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150개소가 있지만, 이 중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이 함께 투숙 가능한 객실을 보유한 가족호텔은 97개소이며, 이 중에서도 5인 이상이 투숙 가능한 객실은 2,640개로 97개소 전체 객실 8,596개 중 30.7%, 가족호텔 전체 150개소의 전체 객실 13,374개소 중 19.7%에 불과함.³⁾ 특히 대구, 광주, 울산, 세종의 경우 가족호텔로 등록된 업종이 아예 없어 해당 지역에서 ‘다자녀가구’가 숙박을 동반한 관광 활동 향유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관광호텔업	313	105	32	84	15	17	20	2	122	45	17	16	31	44	44	61	118	1,086
한국전통호텔업	-	-	-	74	-	-	-	-	9	18	-	-	20	61	16	-	26	224
가족호텔업	19	1	-	2	-	1	-	-	15	15	2	4	7	10	3	10	61	150
호스텔업	119	134	7	88	-	-	5	-	25	78	7	4	23	317	35	38	168	1,048
소형호텔업	10	6	-	3	-	-	-	-	11	7	-	1	5	2	4	4	5	58
의료관광호텔업	1	-	-	-	-	-	-	-	-	-	-	-	-	-	-	-	-	1
소계 (호텔업) (A)	149	141	7	95	-	1	5	-	52	102	9	9	36	331	43	52	235	1,267
휴양콘도업 (B)	1	8	-	1	-	-	-	1	20	78	8	16	5	12	16	17	65	248
숙박업총계 (A+B)	463	254	39	180	15	18	25	3	194	225	34	41	72	387	103	130	418	2,601

자료: 한국호텔업협회 (<http://www.hotelskorea.or.kr>)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호텔업협회, 다자녀(5인 이상) 투숙가능 가족호텔 현황(<http://www.hotelskorea.or.kr/plaza>) 참조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외에도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숙박·관광시설’ 이용 등에서 다자녀 가구에 불편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숙박·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범위를 숙박과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다자녀가구’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숙박과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이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그 외에도 다자녀가구를 위한 여행 프로그램 제공, 관광 교통시설에서의 편의나 관광지·유원시설 할인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제47조의3제1항4)의 예와 같이 숙박·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4)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자녀가구의 숙박·관광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만을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한정하기 보다는 일반적·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숙박과 관광시설’의 경우 민간영역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 근거를 두지 않아, 다자녀가구 관광 활동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유사 입법례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면제대상인 ‘다자녀 양육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는 3명임. 이에 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 자녀 수는 2명임.

따라서, 분야별 정책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과, 동 조항이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시책 마련이라는 일반적·종합적 지원 근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수립시 ‘다자녀가구’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등에 위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령

법령	조 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u>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주거지원 필요계층 및 <u>다자녀 가구의 요건</u> ,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u>국토교통부령</u> 으로 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 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u>현재 미성년자인</u>

법령	조 항
	<u>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u>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 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u>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 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u>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u>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u>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u>다자녀 가구의 자녀</u>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7] 이자면제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 관계증명서 상 <u>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u> 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u>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u>)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함.

문 의 처

02)6788-5377
